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17
----------	------

제출년월일 : 2021. 7. 2.

제안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정전반에 과학적·객관적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을 통한 행정의 정당성 확보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前)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 (後)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나. 총칙

○ 목적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근거법령 등 명시(안 제1조)

○ 공공기관의 범위 정의 등 : 市,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안 제2조)

○ 책무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 지원 노력 등(안 제3조)

다. 추진체계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심의·자문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조~제7조)

○ 법 제6조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에 근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을 관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8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총괄 조정 등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안 제9조)

○ 전담조직 설치 및 공공기관 책임관 협의체 구성·운영(안 제10조)

라.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각 공공기관과 상호연계(안 제11조)
-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 요청 등(안 제12조)
- 시스템(안 제11조제1항)에 데이터 등록 및 공동활용(안 제13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안 제14조)
-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안 제15조)
-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실태 평가 및 포상(안 제16조)

마. 빅데이터 활용

- 빅데이터 활용 사업(서비스제공, 활성화, 포상, 교육 등)(안 제17조)
-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8조)
-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1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붙임)

나. 예산조치 : '21년 예산 기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5. 20. ~ 6. 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4)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1건 반영

가) 제5조에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수정하라는 개선의견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를 추가

6) 비용추계서 :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4.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문자·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이러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빅데이터 산업”이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의 생산·유통·

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다.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정보처리와 관련된 영업 활동을 촉진·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 유지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데이터기반행정 추진계획 수립·변경
3.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자문

4. 시민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9조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및 시 관계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데이터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데이터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두며,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부서의 장을 책임관으로 둘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빅데이터 수집·저장·분석·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시민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

제10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제11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운영) ① 시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수집·공개, 활용·분석, 시각화
2. 데이터의 분석결과, 활용 사례 등 제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개별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데이터의 요청 등) ① 시 책임관(시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수집·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데이터의 등록 및 공동활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시정현안 해결, 시민편익 제공,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사업
2. 데이터 등록·수집·활용에 관한 사업
3.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5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시 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에 데이터관련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빅데이터 활용

제17조(빅데이터 활용)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정·생활·산업·복지·교육·문화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교육
5.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8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빅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2.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3. 수요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4.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5.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6.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8.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향상 지원
9. 빅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
10.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제19조(빅데이터 실태조사)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시민의 빅데이터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의 교육시행에 관한 사무 및 제17조·제18조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1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제20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활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활용할 수 있다.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년 ~
- 사업내용
 -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구성·운영
 -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운영
 - 데이터 활용역량 향상 교육
 - 빅데이터 활용
- 추진방법 : 자체시행 또는 위탁

2. 비용 발생 요인

-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운영
-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운영
- 데이터 활용역량 향상 교육
- 빅데이터 센터 설치·운영
 - 시민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
 -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제공
 -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 빅데이터 경진대회 개최
 -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빅데이터 실태조사
- 데이터 활용 유공자(기관) 포상

3. 관련조문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1년 사업비는 기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임
- 2022년 이후는 2021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추계함
 -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운영,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운영
 - 데이터 활용역량 향상교육, 빅데이터 센터 설치·운영
 - 데이터 분석·활용 유공자 포상(2022년 신설) 등

나. 추계 결과

- 2021년 ~ 2025년(5년) 전체 사업비 4,467백만원 소요예산
-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 편성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조정실 데이터통계담당관 배춘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806,700	849,700	891,700	936,300	982,605	4,467,005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운영		5,200	5,200	5,200	5,200	5,200	26,000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운영		230,000	241,500	253,575	266,254	279,566	1,270,895
데이터 활용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빅데이터 센터 설치·운영		570,000	598,500	628,425	659,846	692,839	3,149,610
데이터 분석·활용 유공자 포상		0	1,500	1,500	2,000	2,000	7,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806,700	849,700	891,700	936,300	982,605	4,467,005
	시 비	806,700	849,700	891,700	936,300	982,605	4,467,005
	국 비						
자체 수입	소 계						
	시 비						
	국 비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